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1. 1 선고 2022가단18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20. 9.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9.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수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군산시 D 답 4272㎡ 중 A의 지분 5025분의 1851.34

2. 전남 화순군 E 임야 53851㎡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C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C은 2004. 1. 5.부터 2008. 2. 28.까지 출판업을 영위하던 법인 대표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4,115,900원을 비롯하여 <표1> '소외 C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 6건 총 2,121,020,330원을 체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소외 C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관할	세목	추상적 성립일	구체적 성립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남대구	양도소득세	2010.09.30	2013.12.02	1,774,115,900	1,019,021,440	755,094,460
강남	종합소득세	2009.12.31	2010.05.31	140,610,600	0	140,610,600
강남	법인세	2011.09.01	2011.09.01	56,561,760	32,321,130	24,240,630
강남	부가가치세	2012.04.11	2012.04.11	22,550,190	11,492,110	11,058,080
강남	부가가치세	2012.07.01	2012.07.01	31,368,810	17,925,060	13,443,750
강남	부가가치세	2012.10.01	2012.10.01	95,813,070	54,750,560	41,062,510
합 계				2,121,020,330	1,135,510,300	985,510,030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 9. 22.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를 형제인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 9. 23.에 별지의 '부동산 표시' 각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F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의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

증의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각 참조).

나. 소외 C이 '이 사건 상속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는 2020. 9. 22.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상속세신고서 상속재산가액 507,488,890원에 대한 '이 사건 상속 지분'인 112,775,300원($507,488,890원 \div 4.5$)이 유일하였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121,020,330원이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다. 채무자가 조세채권자의 채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C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가족인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1항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2항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제척기간

대구지방법국세청 납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22. 5. 4. 대구지방법국세청 채납추적과에서 시달된 상속재산 변칙등기 혐의명단 시달 자료를 검토 중 고액채납자 C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7호증 상속재산 변칙등기 혐의 명단 시달 공문). 따라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

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원물반환을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끝.

